
제2023-16회

중앙운영위원회

2023. 8. 6.

보 고 안 건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8. 6.
안 건 제 출 자 총학생회장 강동재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6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2023-6회 학사·연구심의위원회 참석
 - 일시: 7월 25일(화) 오전 10시
 - 장소: 본관 제1회의실
 - 안건: 제2023-4회 회의록 보고, 제2023-5회 서면결의 보고, 2023년 상반기 산하 분야별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등 보고안건 3건 및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등 심의안건 1건.
- 교무처 및 학생정책처 회의: GPA 백분위 점수 환산 방식 개선 관련 후속 논의 진행
 - 일시: 7월 27일(목) 오후 12시
 - 참석: 이도훈 교무처장, 원종대 교학기획팀장, 이수진 학생정책처장, 방동석 학생지원팀장, 한정현 학부 총학생회 부회장
 - 내용: 6월 28일 진행한 학생처-학부·대학원 총학생회 정규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GPA 백분위 점수 환산 방식 개선안 보고서 및 발표 자료를 제작함. 기존 조사 내용 및 그동안 유관부서 논의를 거치며 수정 및 추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최종 회의 자료를 완성함. 7월 27일 회의를 통해 해당 자료를 발표하였으며 교무처에 추가 논의를 요청하여 후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임.
- 제2023-4회 집행조정위원회 개최
 - 일시: 7월 27일(목) 오후 8시
 - 참석: 오윤석 동아리연합회 회장, 천다호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진 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강동재 총학생회장, 한정현 부총학생회장, 이진우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사업국원(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대리)
 - 안건: 제2023-3회 집행조정위원회 회의록 보고, 학생자치단체 계절학기 생활관비 지원 논의 결과 보고 등 보고안건 2건.

□ 의결문안

-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심 의 안 건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8. 4.

안 건 제 출 자 감사원 원장 김현섭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6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185조제1항제1호 및 제19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일부개정세칙안·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개정 취지

- 현행 「감사시행세칙」 제14조의 겸직금지 조항이 학우들의 감사원 위원(이하 감사위원) 참여를 저해하고 위원 모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을 통해 겸직금지의 범위를 조정하고 완화하기 위함.
- 위원의 수가 「감사시행세칙」 제10조에 규정된 위원의 수(8인) 보다 적어 원활한 정기회계감사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 정기회계감사를 시행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임시위원을 모집하고 인준할 수 있는 회칙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2023년도 상반기 정기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 결원 보충 방안을 마련하고 확정하기 위함.

○ 주요 골자

- 「감사시행세칙」 제14조의 겸직금지 대상을 피감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위원의 자격 제한을 완화함.
- 「감사시행세칙」 제10조2를 신설해 임시위원의 모집, 자격, 역할에 대해 규정하여 임시위원 모집하고 인준할 수 있는 회칙상의 근거를 마련함.

□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별첨1

□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신규조문대비표: 별첨2

□ 감사시행세칙 개정 경위 및 목적: 별첨3

□ 참고사항

○ 관련 규정

■ 감사시행세칙

제9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8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

1.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2명 ~ 4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

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2명 ~ 4명으로 압축한다.

2. 감사위원 4명 ~ 8명 중 2명 ~ 4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2명 ~ 4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3. 감사위원을 총원해야 하는 상황일 시,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부족한 인원을 총원하고 이를 다음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감사원을 총원할 상황은 감사원 내부 논의로 판단한다.
4. 감사위원 사퇴 시, 다음 전학대회에서 사퇴 일시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한다. 만약 감사원장이 사퇴했다면 새로운 감사원장을 내부에서 호선하고 함께 보고한다.

제11조(감사원장)

1.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2. 감사원장은 감사원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기 및 신분보장)

1. 감사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전학대회부터 다음연도 동일한 학기의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2. 감사위원은 임기만료나 사퇴·해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14조(겸직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피감기관의 대표와 위원 및 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관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단, 새내기학생회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와 동아리연합회 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예외로 둔다.

의결문안

-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논 의 안 건

논의안건 제1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8. 6.

안 건 제 출 자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장 한정현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제6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조정하기 위함.
- 「학생회칙」 제166조제3호 및 제177조 등에 따른 격려(기)금의 폐지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정의)**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을 말함. (「학생회칙」 제177조)
- **(역사)** 2017년도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2017. 12. 22.) 후 발효된 「학생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격려금 제도가 시행됨.
- **(기금 운용 현황)** 「학생회칙」 제166조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2023년도 상반기 격려금은 학생회비의 20%(₩11,000,000)로 운용하였으며, 2023년도 하반기 격려금은 학생회비의 20%(₩11,600,000)로 운용할 계획임. 2023년도 상반기 격려금 이월금은 ₩31임.
- **(문제 상황)**
 -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의 책임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격려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함.
 - 학생회비 납부율 감소 및 격려(기)금 재정 악화로 2018년 기준 약 ₩85,000/월 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격려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상황이 이어짐.
 - 학생회비 납부율 감소로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에서 필요한 재정을 배분받기 어려운 상황임. 2023년도 상반기에도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의 2023년도 상반기 실행예산요구안의 총 지출이 중앙회계 보다 약 ₩7,300,000을 초과하여 여러 차례 기구별 회의를 통해 예산 지원을 조정하였음.
- **(격려금 폐지안)** 격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예산을 중앙회계 지원금 등 본회 산하기구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하여 본회 산하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함.

□ 격려금 폐지안

- **(배경)** 학생회비 납부율 감소, 물가 상승, 상설위원회 등 산하기구 수익 사업 중단 등으로 본회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에서 필요한 재정을 배분받기 어려운 상황임. 격려금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매 학기 격려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함.
- **(목적)**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격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예산을 중앙회계 지원금 등 본회 산하기구 사업 지원금으

로 사용하여 본회 산하기구의 활성화와 본회 의사결정 및 재정운용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회칙개정)** 「학생회칙」 제177조부터 제180조까지의 규정 및 「재정운용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회칙 제165조 및 제166조의 일부를 개정하여 격려금 제도를 폐지함.

- **(경과조치)**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안 중 격려기금 비율 20%에 상당하는 금액(₩11,600,000)은 「학생회칙」 제180조제2항에 따라 기층기구회계 및 중앙회계로 전용함.

* 기층기구회계 및 중앙회계로의 전용 비율은 기층기구회계 분배안 및 중앙회계 분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음.

- **(타임라인)**

- (2023. 9.) 전체학생대표자회의 4분기 정기회의에서 격려금 전용을 의결함. 이후 기층기구는 증액된 기층기구회계에 따라 추가로 기층기구회계 지원금을 받으며,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중앙회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학생회칙 제170조에 따라 직전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5,500,000)로 제한됨.

- (2023. 10.) 학생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을 일부개정하여 격려금 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함.

□ 논의사항

- 격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격려금 지급에 사용하던 예산(학생회비의 약 20%)을 기층기구회계 지원금, 중앙회계 지원금 등으로 전용하여 본회 산하기구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안에 관하여 논의를 요청함.

□ 기구별 2023년도 상반기 실행예산요구안: 붙임

□ 참고사항

- 관련 규정

■ 학생회칙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2. 기층기구회계: 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제177조(목적)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제178조(적용범위)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집행기구
2. 자치기구
3. 전문기구

제179조(지급일)

1. 격려금은 전학대회에서 격려금 분배안이 승인된 이후 20일 이내 본회 산하기구의 공금 계좌로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 운용 계획안에 따라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이체의 형태로 격려금을 분배한다.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1.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3.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 재정운용세칙

제27조(적용대상)

격려금 지급 대상은 「학생회칙」 제17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8조(격려금 책정)

1.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2.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3. 격려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29조(격려기금 관리)

1. 격려기금은 「학생회칙」 제180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 위원회에 있다.
 2. 격려기금은 격려금 지급 인원수의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월 금을 둘 수 있다.
 3. 중앙집행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이월금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기구별 2023년도 상반기 실행예산요구서

구분	증양회계 지원금 신청 금액	학생회비 총수입 대비 비율	예년에 준하는 예산 규모			
			18'~22' 평균(최근 5년)	18'~19'(코로나19 이전)	20'(코로나19 당해)	21'~22'
의결기구	₩1,065,000	1.94%	1.92%	3.68%	1.00%	0.17%
중앙집행위원회	₩0	0.00%	20.61%	26.33%	22.03%	12.03%
동아리연합회	₩1,315,000	2.39%	1.53%	2.20%	0.00%	1.88%
학생복지위원회	₩1,555,600	2.83%	0.00%	0.00%	0.00%	0.00%
행사준비위원회 운영비	₩454,388	0.83%	1.11%	1.61%	1.56%	0.39%
학생문화공간위원회	₩2,160,000	3.93%	2.35%	5.21%	0.00%	0.66%
행사준비위원회 축제 지원금	₩26,000,000	47.27%	23.68%	21.26%	20.88%	27.49%
감사원	₩180,000	0.33%	0.53%	0.92%	0.65%	0.07%
문화자치위원회	₩0	0.00%	0.18%	0.44%	0.00%	0.00%
소통국제화위원회	₩0	0.00%	0.10%	0.07%	0.00%	0.17%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849,000	1.54%	0.45%	1.12%	0.00%	0.00%
G-inK	₩1,132,500	2.06%	1.12%	1.29%	0.00%	1.50%
KAIST 글로벌학생봉사단	₩0	0.00%	0.00%	0.00%	0.00%	0.00%
VOK	₩2,730,000	4.96%	1.75%	0.76%	5.21%	1.00%
ELKA	₩0	0.00%	0.10%	0.23%	0.00%	0.00%
SPARCS	₩119,000	0.22%	0.72%	1.23%	0.00%	0.56%
계	₩37,560,488	68.29%				

	당해년도 예산
수입	₩30,250,000
지출	₩37,560,488
잔액	₩7,310,488